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조선·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제46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
교통부”로 한다.

제52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58”을 “960”로 하고, 일반직 계 “947”을 “94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93”을 “895”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2조 관련)

1. 제52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2. 제52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또는 5급 이하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획조정실) ①·② (생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25. (생략) <u><신 설></u>	제10조(기획조정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5. (현행과 같음) <u>26.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u>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u>행정안전부</u>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행정안전부</u> , <u>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u> --- ----- ----- ----- ----- ----- ----- ----- ----- -----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2조(한시정원) ① 삭 제

② 조선·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④ 삭 제

-----.

제52조(한시정원)

<삭 제>

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삭 제>

⑥ -----

----- 2024
년 2월 28일-----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58</u>	<u>960</u>	+2
•	•	•	
•	•	•	
일반직 계	<u>947</u>	<u>949</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93</u>	<u>895</u>	+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9